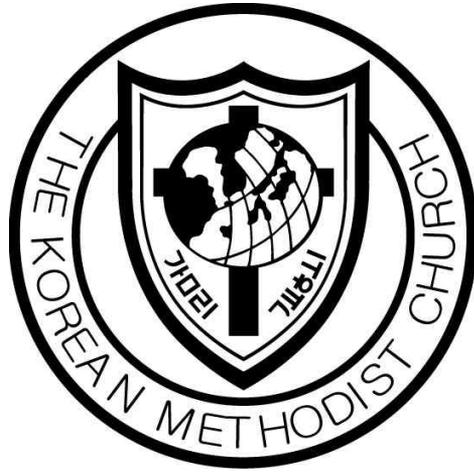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공 청 회**



- 1 차 (천안) : 2025년 9월 2일(화) 14:00~16:30  
천안남산교회 (담임목사 유명권)
- 2 차 (서울) : 2025년 9월 4일(목) 14:00~16:30  
꽃재교회 (담임목사 김성복)

**제 36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 ◆ 목 차 ◆

①	개회예배 순서 .....	3
②	1소위원회 개정안 .....	5
③	3소위원회 개정안 .....	11
④	4소위원회 개정안 .....	16

## [ 제36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소위원회 ]

◆ 위원장 : 김필수 목사 / 부위원장 : 김영관 장로

◆ 서 기 : 김동규 목사 / 부 서 기 : 조병제 장로

소위원회	위원장	서기	위원	
			교역자	평신도
<b>1 소위원회</b> 2편 헌법 3편 조직과 행정법 10편 과정법	김종현	조병제	김동규 임용봉	장채광 서형욱
<b>2 소위원회</b> 5편 교회 경제법 6편 교역자 은급법 12편 각종 정관, 규정 * 자치단체 규칙	유명권	김승제	김찬호 김응귀	이철희 이강래
<b>3 소위원회</b> 1편 역사와 교리 4편 의회법 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김영민	신만철	성중현 권균한	김정규 김영관
<b>4 소위원회</b> 7편 재판법 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1편 특별법 및 임시조치법 13편 문서서식	전병식	류호준	김진석 남강식	임동규 송인규

◆ 1차 공청회 개최예배 ◆

일시 : 2025년 9월 2일(화) 오후 2시

장소 : 천안남산교회

사회 : 김동규 목사 (장개위 서기)

찬 송 ..... 299장(하나님 사랑은) ..... 다 같 이

1.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2. 내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3. 그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힘이 크도다
4.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맘과 영에 채우사 새힘을 주소서

기 도 ..... 김 영 관 장로  
(장개위 부위원장)

성 경 말 씀 ..... 사 회 자

말 씀 ..... 김 필 수 목사  
(장개위 위원장)

축 도 ..... 김 필 수 목사  
(장개위 위원장)

## ◆ 2차 공청회 개최예배 ◆

일시 : 2025년 9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 꽃재교회

사회 : 전병식 목사(장개위 4소위원장)

찬 송 ..... 210장(시온성과 같은 교회) ..... 다 같 이

1.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2.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3.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아멘.

기 도 ..... 조 병 제 장로  
(장개위 부서기)

성 경 말 씀 ..... 사 회 자

말 씀 ..... 김 종 현 목사  
(장개위 1소위원장)

축 도 ..... 김 필 수 목사  
(장개위 위원장)

제36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1소위원회 공청회 자료

1. 목회자 후보자의 목사 안수 이전 임상목회교육(CPE) 이수 의무화에 관한 개정안

1) 개정 취지 : 목회 현장의 다변화에 따른 전문성의 요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목회자의 심리적 건강과 돌봄 역량 강화, 치유와 회복의 목회를 실현할 품격과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2) 관련 조항 :

현행	개정안	비고
<b>제 10 편 과정법</b>	<b>제 10 편 과정법</b>	
<b>제 5 장 교역자 진급과정</b>	<b>제 5 장 교역자 진급과정</b>	
【1828】 제28조(진급과정)	【1828】 제28조(진급과정) ⑨ <u>목회자 후보자는 신학대학 입학부터 준회원 2년급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임상목회교육(CPE)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CPE 교육기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준한 CPE 수퍼바이저에 의해 운영되는 공인기관으로 한다.</u> <신설>	⑨ 시대에 부합하는 심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한 목회자를 양성하고 수준 높은 목회적 돌봄을 위함임.
	<u>부 칙 (2025. 10. 30)</u>	
	【18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46】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제28조 제9항은 2027년 서리 과정에 허입하는 목회자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b>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b>	<b>제 12 편 각종 정관 및 규정</b>	
<b>11.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b> <b>【2207】 제7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b> ① ~ ⑦ <생략>	<b>11.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b> <b>【2207】 제7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b> ① ~ ⑦ <현행과 같음> <b>⑧ 교역자 진급과정에 필요한 CPE 교육 과정을 관장한다.</b> <u>&lt;신설&gt;</u>	

## 2. 한국감리교회와 글로벌감리교회와의 관계에 관한 개정안

- 1) 개정 취지 : 글로벌연합감리교회가 분리되면서 연합감리교회와의 협력관계를 명문화한 것과 동일하게 글로벌감리교회와의 협력관계도 명문화하여 두 교단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개정함
- 2) 관련 조항 :

현행	개정안	비고
<b>제 3 편 조직과 행정법</b>	<b>제 3 편 조직과 행정법</b>	
<b>제 10 장 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b>	<b>제 10 장 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b>	
<b>제 1 절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b>	<b>제 1 절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b>	
<b>【380】 제180조(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역사적으로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선교한 연합감리교회에 대하여</b>	<b>【380】 제180조(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역사적으로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선교한 연합감리교회</b>	연합감리교회가 글로벌감리교회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한국감리

현행	개정안	비고
본 감리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주 안에서 형제 교회로서 서로 간에 대표를 파송하여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선교에 이바지한다.	(UMC)에 대하여 본 감리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주 안에서 형제 교회로서 서로 간에 대표를 파송하여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선교에 이바지한다. <u>그리고 미국 글로벌감리교회(GMC)와도 연합감리교회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lt;개정&gt;</u>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와의 협력관계를 명문화한 것과 동일하게 글로벌감리교회의 협력관계를 명문화하여 서로 지속적인 협력자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정회원 연수과정 중 임상목회(CPE) 의무화에 따른 개정안

- 1) 개정 취지 : 목회 현장의 다변화에 따른 전문성의 요구가 필요한 상황에 목회자의 심리적 건강과 돌봄 역량 강화, 치유와 회복의 목회를 실현할 품격과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 2) 관련 조항 :

현행	개정안	비고
<b>제 3 편 조직과 행정법</b>	<b>제 3 편 조직과 행정법</b>	
<b>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b>	<b>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b>	
【1831】 제31조(연회 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⑤ <생략>	【1831】 제31조(연회 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6과정 : 목회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과 목회돌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상목회교육(CPE)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한다. &lt;신설&gt;</u>	⑥ 시대에 부합하는 심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한 목회자를 양성하고 수준 높은 목회적 돌봄을 위함임.

#### 4. 외국인 선교사 파송에 관한 특별법 신설안

- 1) 개정 취지 : 3개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과정을 마치고 국내 개체교회에서 교회학교, 청소년, 이주민, 다문화 등의 사역을 통해 개체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 2) 관련 조항 :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1 편 특별법 및 임시조치법	제 11 편 특별법 및 임시조치법	
	<p>5. 외국인 선교사 파송에 관한 특별법 &lt;신설&gt;</p> <p>【1962】 제1조(외국인 선교사 파송) 감리회는 개체교회 사역을 위해 외국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p>	
	<p>【1963】 제2조(외국인 선교사의 인준) 외국인 선교사는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감리회 본부 선교국 선교사인준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인준한다.</p>	
	<p>【1964】 제3조(외국인 선교사의 사역) 외국인 선교사는 개체교회 구역담임자의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사역의 범위는 개체교회 교회학교, 청소년 사역, 이주민 사역, 다문화 사역 등으로 제한한다.</p>	
	<p>【1965】 제4조(외국인 선교사의 신분) 외국인 선교사로 파송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종교비자(G-1 또는 D-6 등)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자로 한다.</p>	
	<p>【1966】 제5조(외국인 선교사의 자격과 구분) 외국인 선교사는 감리회의 진급 제도(서리, 준회원, 정회원, 은급 등)에 따른 목회자 직무와 무관하며, 목회자가 아닌 외국인 선교사의 자격으로 사역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1967】 제6조(시행세칙) 본 특별법은 「교리와 장정」의 세계 선교사 관리규정과 별개로 적용되며, 필요한 세부 시행세칙은 선교국에서 정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2025. 10. 30) 【19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은퇴 날짜 조정 건에 관한 개정안

- 1) 개정 취지 : 현행법은 출생연도가 같아도 몇 개월 차이로 은퇴가 1년 차이 나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출생연도가 같으면 같은 연도 지방회와 연회에서 은퇴하도록 개정함.
- 2) 관련 조항 :

현행	개정안	비고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2 장 교회	제 2 장 교회	
제 5 절 장로	제 5 절 장로	
【228】 제28조(장로의 은퇴) <u>2월 말일을 기준으로</u> 70세가 된 장로는 <u>당해연도</u>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228】 제28조(장로의 은퇴) 70세( <u>1월 1일~12월 31일</u> )가 된 장로는 <u>다음연도</u>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교역자</b></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연회 회원</p> <p>【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과 같다.</p> <p>① <u>3월말 기준으로</u> 70세가 된 교역자는 <u>당해연도</u> 연회에서 은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교역자</b></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연회 회원</p> <p>【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과 같다.</p> <p>① 70세(<u>1월 1일~12월 31일</u>)가 된 교역자는 <u>다음연도</u> 연회에서 은퇴한다. &lt;개정&gt;</p>	

제35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3소위원회 공청회 자료

현행	개정안	비고
<b>제 1 편 역사와 교리</b>	<b>제 1 편 역사와 교리</b>	
<b>제 1 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b>	<b>제 1 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b>	
제 1 절 미감리회·남감리회 선교부 선교 시대	제 1 절 미감리회·남감리회 선교부 선교 시대	
<p>【2】 1. 복음 수용과 선교사 내한 1870~1880년대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갈망하던 한국인들은 ……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스크랜턴이 5월 3일에 내한하였다.</p>	<p>【2】 1. 복음 수용과 선교사 내한 1870~1880년대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갈망하던 한국인들은 ……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u>4월 2일 부산을 거쳐</u> 4월 5일 부활주일에 <u>제물포로</u>, 스크랜턴이 5월 3일에 내한하였다. &lt;개정&gt;</p>	아펜젤러의 부산 경유 내용 추가
<p>【9】 8. 일제 말기 교회 수난 일제 말기 교회는 ‘신사참배’를 비롯한 일본의 국가 종교의식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일제의 회유와 위협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 예산제 일교회 청년·학생들이 ‘학생속회’를 통해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다가 발각되어 투옥되었고, 모곡교회의 민족운동가 남궁역 전도사에게 영향을 받은 흥천과 춘천 지방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십자가당’을 만들어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투옥되었다. 그리고 동부연회의 철원읍교회 강종근 목사, 회양읍교회 권원호 전도사, 천곡교회 최인규 권사 등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쟁하다가 옥중 순교하였다.</p>	<p>【9】 8. 일제 말기 교회 수난 일제 말기 교회는 ‘신사참배’를 비롯한 일본의 국가 종교의식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일제의 회유와 위협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 예산제 일교회 청년·학생들이 ‘학생속회’를 통해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다가 발각되어 투옥되었고, 모곡교회의 민족운동가 남궁역 전도사에게 영향을 받은 흥천과 춘천 지방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십자가당’을 만들어 항일투쟁을 벌이다가 투옥되었다. 그리고 동부연회의 철원읍교회 강종근 목사, 회양읍교회 권원호 전도사, 천곡교회 최인규 권사 등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쟁하다가 옥중 순교하였다. <b>시베리아 선교사</b></p>	<p>김영학 선교사 순교 명기</p> <p>1990년 장정까지는 명기가 되어 있었음.</p> <p>제2절 선교연회</p> <p>【253】 제9조 만주(만주, 몽고 시베리아) 선교연회 경계는 동만, 북만, 시베리아 등...(현재 소련, 중공 치하에 있으며, 시베리아</p>

현행	개정안	비고
	로 파송된 김영학 목사는 소련 공산당의 배교를 거부하고 마가단 노동수용소에서 순교하였다. <개정>	지방은 1936년 8월 소련 공산당에 의하여 선교가 중지되고 김영학 감리사는 투옥되었다가 순교함)

현행	개정안	비고
<b>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b>	<b>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b>	
<b>제 1 장 총 칙</b>	<b>제 1 장 총 칙</b>	
<p>【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 총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p> <p>①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b>70일</b>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선거 운동은 선거일 <b>60일</b> 전부터 시작한다.</p>	<p>【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 총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p> <p>①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b>30일</b>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선거 운동은 선거일 <b>20일</b> 전부터 시작한다. &lt;개정&gt;</p>	
<b>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b>	<b>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b>	
<p>【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p> <p>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 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 개시 30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p> <p>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2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p> <p>③ 선거일 <b>70일</b> 전에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p>	<p>【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p> <p>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 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 개시 30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 및 『<b>기독교세계</b>』에 공고한다. &lt;개정&gt;</p> <p>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선거일 <b>30일</b> 전에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lt;개정&gt;</p>	<p>① 기독교 세계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1614】 제14조(선거권)</p> <p>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화 정회원 <b>1년급</b>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p> <p>② ~ ④ &lt;생략&gt;</p>	<p>【1614】 제14조(선거권)</p> <p>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화 정회원 <b>13년급</b>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lt;개정&gt;</p> <p>② ~ ④ &lt;현행과 같음&gt;</p>	<p>선거권자 수가 2020년 교역자 5022명, 2022년 교역자 7781명, 2024년 교역자 8846명으로 총선거권자는 10,044명→15,562명→17,692명으로 선거권자가 개정 전보다 약 7,648명이 확대되어 선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었다.</p> <p>일부 선거권자는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에 관여하면서 목회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사 자격을 갖게 되는 정회원 13년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후보자의 등록</b></p> <p>【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p> <p>① 선거일 60일 전에 후보자 명단과 기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p> <p>② ~ ⑤ &lt;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후보자의 등록</b></p> <p>【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p> <p>① 선거일 60일 전에 후보자 명단과 기호를 선관위 홈페이지 및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lt;개정&gt;</p> <p>② ~ ⑤ &lt;현행과 같음&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장 선거운동</b></p> <p>【1621】 제21조(선거감시단)</p> <p>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선거감시원 <b>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b>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한다.</p> <p>②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선거 감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장 선거운동</b></p> <p>【1621】 제21조(선거감시단)</p> <p>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선거감시원 <b>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b>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한다. &lt;개정&gt;</p> <p>② ~ ④ &lt;현행과 같음&gt;</p>	<p>① 선거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역할과 활동비 내용을 보완</p>

현행	개정안	비고
<p>③ 선관위가 선거감시원을 인준한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주어야 한다.</p> <p>④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감시원이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⑤ <u>선거감시원 활동비는 선관위에서 지급한다. &lt;신설&gt;</u></p>	
<p>【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p> <p>① 후보자는 <u>선관위에 등록된 후</u> 선거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u>이에</u>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p> <p>⑧ 합동정책 발표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u>주최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u></p>	<p>【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p> <p>① 후보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u>선거운동에</u>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lt;개정&gt;</p> <p>⑧ 합동정책발표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u>선관위에서 부담한다. &lt;개정&gt;</u></p>	<p>① 내용을 명확하게 함</p>
	<p>【0000】 제00조(선거 비용 제한) &lt;신설&gt;</p> <p>① <u>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u></p> <p>1. 감독회장 선거 2억원</p> <p>2. 연회 감독 선거 8천만원</p> <p>② <u>위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u>을 무효로 한다.</p>	<p>교단 선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핵심 원칙을 준용하고, 선거공영제 도입, 금권 선거에 대한 징벌 조항 강화, 선거 기부금 제도에 대한 제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7 장 보 칙</b></p> <p>【1640】 제40조(벌칙 처벌)</p> <p>① ~ ⑪ &lt;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7 장 보 칙</b></p> <p>【1640】 제40조(벌칙 처벌)</p> <p>① ~ ⑪ &lt;현행과 같음&gt;</p> <p>⑫ <u>금권 선거를 제보한 자는 신분이 보호되며, 허위 제보가 아닌 이상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lt;신설&gt;</u></p>	

현행	개정안	비고
	<p><b>【0000】 제00조(후원금 모집) &lt;신설&gt;</b></p> <p>① <u>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후원금 모집을 선관위 승인하에 진행할 수 있다.</u></p> <p>② <u>후원금 모금과 사용은 다음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후보별 후원금 총액 상한은 감독회장 후보자 2억원, 감독 후보자는 8천만원으로 한다.</u></li> <li>2. <u>후원금은 실명 후원만 허용하며 후보자가 선관위에 등록한 이후에 납입한다.</u></li> <li>3. <u>후보자는 등록 시 후원 계좌번호를 선관위에 제출한다.</u></li> <li>4. <u>후원금 내역은 선거 종료 후 15일 내에 전면 공개한다.</u></li> <li>5. <u>선거법 위반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후원금 전액은 선관위에 귀속 조치한다.</u></li> <li>6. <u>후원금은 개인별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u></li> <li>7. <u>후원금 기부는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한다.</u></li> <li>8. <u>외국인, 단체, 법인, 교회 명의의 후원금 기부는 금지한다.</u></li> </ol>	

# 제35회 총회

## 장정개정위원회 4소위원회 공청회 자료

### 1. 화해조정제도 강화와 재판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에 관한 개정안

#### (1) 개정 취지 :

##### 1) 일반재판(징계재판)의 경우

고소(고발)후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화해조정제도는 실무상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심사위원회에서 기소 후 재판위원회의 판결 전에 재판위원회가 직접 화해 조정을 수행하도록 개정함.

##### 2) 행정재판의 경우

현행법은 행정재판위원회가 선택적으로 화해 조정을 시도하거나, 화해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판결할 수 있으나, 행정재판위원회가 판결 전에 의무적으로 화해 조정을 1회 이상 시도하도록 개정함.

##### 3)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① 총회 재판위원회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의 조직 개정

연회 추천 6명 감독회장 지명 2명과 법조인 2명 포함 10명으로 구성하되, 일반위원 8명을 1반, 2반으로 편성하고, 법조인 2명은 각 반에 모두 참여하게 하여, 법조인의 비중을 증가시켜 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

#### ②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조직 개정

연회 추천 6명과 감독회장 지명 1명과 법조인 위원 5명을 전원합의체로 구성하여, 법조인의 비중을 증가시켜 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

#### ③ 총회 심사위원회의 조직 개정

위 총회 재판위원회의 조직과 동일하게 하여, 법조인의 비중을 증가시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

④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직 개정

연회 추천 6명과 감독회장 지명 1명과 법조인 1명으로 구성하여 법조인을 위원으로 보강하도록 하여 화해 조정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함.

⑤ 연회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의 조직 개정

10명(교역자 5인, 평신도 5인) 법전문인 2인 총 12인으로 하고, 일반위원 10명을 2반으로 편성하되, 법전문인 2명은 각 반에 모두 참여하게 하여 법전문인의 비중을 증가시켜 재판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함. 연회에 법조인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총회 본부 소속 법조인이 연회재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관련 조항 :

현행	개정안	비고
<p><b>제 7 편 재판법</b></p>	<p><b>제 7 편 재판법</b></p>	
<p><b>제 1 장 일반재판법</b></p>	<p><b>제 1 장 일반재판법</b></p>	
<p><b>제 3 절 심 사</b></p>	<p><b>제 3 절 심 사</b></p>	
<p>【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p> <p>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b>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b>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p> <p>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다만, 소송 당사자와 동일 의회 소속 위원이 없는 반에 배정한다.</p>	<p>【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p> <p>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b>6명(교역자 3명, 평신도 3명)과</b>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b>교역자 2명</b>,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lt;개정&gt;</p> <p>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다만, 소송 당사자와 동일 의회 소속 위원이 없는 반에 배정한다. <b>또한, 연회와 총회의 경우 2명의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 위원은 각반에 모두 참여하여 심사에 임한다.</b> &lt;개정&gt;</p>	

현행	개정안	비고
<p>【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④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b>11명</b>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회 심사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당부재판을 신청한 경우, 감독회장은 총회 재판위원회 위원 이외의 법조인 3명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한다.</p> <p>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b>11명</b>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회 심사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당부재판을 신청한 경우, 감독회장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이외의 법조인 3명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한다.</p> <p>⑦ 연회 재판위원은 <b>6명</b>(법전문인 <b>1명</b>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b>6명</b> 중에서 대치한다.</p> <p>⑧ 총회 재판위원은 <b>7명</b>(법조인 <b>1명</b>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b>7명</b> 중에서 대치한다.</p> <p>⑩ 지방회, 연회, 총회의 재판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해당 재판위원회가 재판하게 한다. 다만, 당사자와 동일 의회 소속 위원이 없는</p>	<p>【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④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b>6명</b>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회 심사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당부재판을 신청한 경우, 감독회장은 총회 재판위원회 위원 이외의 법조인 3명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한다. &lt;개정&gt;</p> <p>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b>6명</b>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회 심사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당부재판을 신청한 경우, 감독회장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이외의 법조인 3명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한다. &lt;개정&gt;</p> <p>⑦ 연회 재판위원은 <b>7명</b>(법전문인 <b>2명</b>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b>법전문인 2명은 각 반에 모두 참여하여 재판에 임한다.</b>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중에서 대치하고, <b>법전문인 위원의 경우는 연회나 총회의 다른 법조인 위원으로 대치한다.</b> &lt;개정&gt;</p> <p>⑧ 총회 재판위원은 <b>6명</b>(법조인 <b>2명</b>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중에서 대치하고, <b>법조인 위원의 경우는 총회 다른 재판위원회 위원으로 대치한다.</b> &lt;개정&gt;</p> <p>⑩ 지방회, 연회, 총회의 재판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해당 재판위원회가 재판하게 한다. 다만, 당사자와 동일 의회 소속 위원이 없는 반</p>	

현행	개정안	비고
반에 배정한다.	에 배정한다. 또한, 연회와 총회의 경우 2명의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 위원은 각반에 모두 참여하여 재판에 임한다. <개정>	
【1434】 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한다.	【1434】 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한다. ⑧ 재판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재판위원회가 화해조정기일을 정하고 화해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행정 재판법</b></p> <p>【1499】 제13조(화해조정)</p> <p>①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해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화해조정 결정은 화해조정위원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행정 재판법</b></p> <p>【1499】 제13조(화해조정)</p> <p>① 행정재판위원회는 행정재판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행정재판위원회가 직접 또는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화해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lt;개정&gt;</p>	